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운업·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조정(안 제40조의2, 제40조의9)

- 1)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병무청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추가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의 서약서 제출 절차 마련(안 제40조의4, 안 제40조의10 신설)

1)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이 제출하는 서약서 제출 시기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2020. 8. 20. ~ 8. 31.)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20. ~ 9. 10.)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 후단 중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을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4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⑧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해운업체 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의9제1항제4호 중 “상태 등”을 “상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제4장제2절에 제4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때 제40조의4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 및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 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② (생략)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 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 ----- ----- ----- ----- -----, ----- ----- 방법 ----- ----- ----- ----- ----- ----- -----, -----
<신설>	④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략)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 ⑧ (생략) <신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⑧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 제9항까지 ----- ----- ----- -----, -----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등 <신설>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여부 등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정기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정기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② -----

----- . <단서 삭제>

1.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때 제40조의4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 및 법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2) 748 - 5137~9 (042) 481 - 2641